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08
----------	-------

발의연월일 : 2026. 7. 7.

발 의 자 : 송영길·허영·허종식  
박홍배·정일영·노종면  
민병덕·김성희·이훈기  
이용우·김교홍·박선원  
김현정·황명선·문금주  
안도걸·전용기·박정  
양부남·조경태·강경숙  
안호영·신정훈·맹성규  
김의겸·박지원·최형두  
김영배 의원(28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 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 이후 사용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이란 중고자동차의 매집·검사·보관·운송·해외 판매 등 중고자동차를 국외로 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란 중고자동차를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수출지원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중고자동차 수출정책협의회) ①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고자동차 수출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

제8조(수출지원특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이하 “수출지원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지원특구는 「항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출지원특구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출지원특구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지원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0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수출지원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련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수출지원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출지원 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등 품질인증 인프라 구축
3. 중고자동차 물류 등 관리시스템 구축

제11조(수출지원특구에 대한 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지원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수출지원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2조(중고자동차수출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지원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수출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출지원특구의 관리
2.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 지원

3.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말소등록, 선적 및 통관 등 행정절차 지원
4.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 대한 교육 지원 및 민원 상담
5.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관련 관계 기관 간 협력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

제13조(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신고) ① 중고자동차를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이하 “수출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수출통합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2. 「관세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3. 「항만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③ 그 밖에 수출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2. 국제 전시회·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해외 품질 인증·관리 지원
4. 해외 공동 물류망 구축 지원
5. 해외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연계 지원

제16조(해상운송비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운송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금융 지원 등)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 그 밖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 그 밖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지원기관의 임직원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한 자
2. 제19조제2항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